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주식회사 풀무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①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역할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구 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 ⑤ 사외이사인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재무 담당 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사외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에 선임된 이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

제 3 장 회 의

제 5 조 (종 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과 회사의 감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부의안건 중 결의사항에 대하여 가결, 부결, 조건부 가결 또는 수정가결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부의사항 등)

- ① 위원회에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의안건

- 가. 감사보고서의 승인·제출
- 나.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승인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
- 라.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승인
- 마.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 승인
- 바. 위원장의 선임
- 사.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 아.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자.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차.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관련 보고 안건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보고 안건
 - 가. 이사회 소집 청구
 -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보고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대표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보고 안건
 - 가. 업무·재산 조사 및 후속조치의 결정
 - 나. 자회사의 조사 및 후속조치의 결정
 - 다. 이사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결정
 - 라.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 마. 소수 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바. 감사인의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결정
 - 사. 감사인의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결정
 - 아.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의 평가
 - 자.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차.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카. 내부감시장치 운영실태 평가
 - 타.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파.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4. 기타 보고 안건
 - 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감사인과 체결한 감사계약의 계약조건
 - 2.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결과 보고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내부감사부서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4 장 감사인의 선임 등

제 13 조(선임)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15 조(감사인의 해임)

①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 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에 승인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 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9 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0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2006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규정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